

[정관 변경 내역]

구 분	변경전	변경후
제1조 [상호]	이 회사는 넵코어스 주식회사라 한다. 영문으로는 NAVCOURS CO.,LTD. 로 표기한다.	이 회사는 덕산넵코어스 주식회사 라 한다. 영문으로는 DUK SAN NAVCOURS CO.,LTD. 로 표기한다.
제4조 [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avcours.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이 회사의 공고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dsnc.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8조2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부족분은 다음 년도의 배당 시에 전보하지 아니한다.
제9조 [주권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신설]	이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9조의 2(주식 등의 전자등록) 회사는(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의4 [주식의 소각]	① 회사는 이사회회의 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주주에게 배당 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소각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방법으로 한다.	① 회사는 이사회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② 삭제
제11조 [명의개서대리인]	①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사무취급장소와 대리업무의 범위는 이사회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③ 이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제③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①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사무취급장소와 대리업무의 범위는 이사회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③ 이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제③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제12조 [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제11조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①항 및 제②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신설]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제11조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①항 및 제②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④ 제1항에서 제3항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 12조의 2(주주명부) 회사의 주주명부는 「상법」 제352조의 2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제16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1조, 제12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신설]	제11조, 제12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는 제12조 준용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16조의 2(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할 수 있다.
제17조 [소집시기]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29조 [이사 및 감사의 수]	① 이 회사의 이사는 2명 이상 10명 이내로 한다.	①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한다.
제43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및 비치 등]	②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2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에는 금전과 주식 으로 할 수 있다.	① 이익의 배당에는 금전과 재산 으로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1년 3월 30일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9조의 2, 제11조 3항, 제12조, 제12조의 2, 제16조, 제16조의 2, 개정 규정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 시행한다.